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경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999

발의연월일: 2020. 9. 17.

발 의 자:김경협·김홍걸·강훈식

이형석 · 한병도 · 김민철

강준현 · 박상혁 · 서영석

문진석 · 김한정 · 이재정

이학영 · 송옥주 · 조응천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, 상업, 산업, 유통, 정보통신, 생태, 문화,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은 대부분이 개발이익이 발생되지만 해당 지역 내 생활 SOC 시설(도서 관, 문화체육공공시설 등) 설치에는 미온적이어서,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의 환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·문화체육시설의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71조의3 신설).

법률 제 호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1조의3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(「개발이익 환수에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 -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 공·문화체육시설의 설치
 - 2. 그 밖에 주거환경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 - ② 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재투자의 방법・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적용례) 제7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(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신 설>	개 정 안 제71조의3(개발이익의 재투자) ①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(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)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투자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은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・문화체육시설의설치

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기준 및 재투자의 방법・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